출장보고서

1. 출장목적

❑ 미국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 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정부기관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방문

2. 출장기간 : 2011년 3월 18일 ~ 26일

3. 출장자

❑ 변용찬 선임연구위원, 김성희 부연구위원, 이송희연구원

4. 출장지 : 미국

5. 기관 방문 내용

1 뉴욕시 인적관리국 사회보장서비스부

❑ 면담자 및 기관소개

면담자	방문사진
○ Robert Doar(henry-jenkinsr@hra.nyc.gov) ○ Jennifer Yeaw(Executive Officer, yeawj@hra.nyc.gov)	

❑ 기관소개

○ 약 15,000명의 직원들이 3백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
○ 현금보조, 건강보험, food stamps,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, 아동 및

성인보호 서비스, HIV/AIDS 지원서비스, 직업보조서비스 등을 제공

○ 개인과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

○ Home care program과 관련하여서는 CASA와 신청서 접수, 자격심사, Medicaid 신청 및 적용여부에 대한 업무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고객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증대시키는 역할

❑ 뉴욕시 장애인활동지원 프로그램

① 프로그램명 : Home Care Services Program(HCSP)

❑ 뉴욕시의 HCSP는 일상적인 활동(Activities of Daily Living; ADL)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

❑ HCSP는 적정 서비스 선정에 대한 자문, 서비스 제공기관 추천 등의 업무도 수행

② 대상자 : Medicaid에 적용되는 사람이 주요 대상임
(단, 특정 프로그램에서는 Medicare 적용 대상자도 포함될 수 있음)

③ 장애인활동지원프로그램(HCSP) 종류

❑ 개인치료(Personal Care)

○ 의료보조가 필요하지만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사람에게 가사도우미를 제공하는 서비스

· 가사일(housekeeping): 쇼핑, 세탁, 식사준비(재택"in-house"근무에서만 제공)

· 개호(home attendant): 청소, 쇼핑, 세탁, 식사준비, 간단한 개인보호서비스, 긴급후송시 간호보조, 의료기관 방문 동행, 고객의 행동변화 관찰, 투약 보조 등

❑ 장기치료(Managed Long-Term Care Program)

○ 병원 입원 또는 보호시설에 자기체류 하여야할 환자가 가정에서 안전하게 모물 수 있도록 환자에게 종합적인 치료 플랜을 제공하는 것

○ 간호, 가정건강관리, 직업치료, 물리치료, 언어치료, 식사배달 등

- 단, Medicaid or/and Medicare 적용 대상자 또는 전문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적용대상자 중 연령이 55세 이상인 사람이 이용 가능함

❑ 장기치료가정건강치료(Long Term Home Health Care Program)

○ 모든 연령대의 환자나 장애자가 안정상 가능한 오랜시간 자신의 가정 또는 보호자의 가정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

○ 환자의 가사일, 활동 및 기타 요양 등

❑ 생활보조(Assisted Living Program)

○ 55세이상이며 의료보조가 필요한자에게 지원

❑ 가정치료(Care-at-Home Program)

○ 병원,진료소,임상검사, 물리치료, 언어치료 및 직어비료를 비롯한 집수리 서비스로 단기치료, 일시적 위탁 간호도 가능함

○ 중증 장애아동을 위해 시설요양소에서 가능한 의료 및 관련 서비스를 자택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

④ 서비스 이용방법(Consumer Directed Personal Assistance Program (CDPAP))

❑ 자기관리가 가능한 경우, 본인이 서비스 선택과 활동보조인을 고용하고, 그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제도임.

○ 한편, 본인을 대신에 비용지급과 제반관리가 사무관리 대행기관(e.g. ILC나 비영리 장애인단체 등)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함

❑ 따라서 본인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이 주어지게 됨

○ 활동보조인과의 인터뷰, 교육, 서비스 선택, 감시 등은 본인 책임하에 있음

○ 활동보조인은 서비스 신청인과 상주할 수 없으며, 본인 부모, 서비스 신청인의 배우자나 부모, 자녀, 배우자의 자녀, 법정 대리인(legal guardian)은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음

○ 활동보조인 부재시 대신할 대리인도 본인이 선정해야 함

○ 활동보조서비스가 아닌 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원할 경우, 필요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요구 등도 본인이 수행할 수 있어야 함

○ 본인의 의료상태 변화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CASA와 서비스 제공기관(활동보조인 소개업체)에게 통보하여 함

○ New York City Human Resource Administration으로부터 세 종류의 승인을 받아함. (1) Medicaid 대상자이어야 하고 (2) HCSP 대상자이며 (3) CDPAP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

〈 뉴욕시의 Home Care Services의 종류와 내용 〉

분류	내용
Personal Care	○가정방문을 통한 가사 서비스 제공 - 일상적인 생활활동(걷기, 식사, 청소, 목욕과 욕실이용 등)을 적어도 하나내지는 둘 이상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
Long-Term Home Health Care Program	○보다 높은 간호(high skilled nursing home-level care)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- home care, case management
Managed Long-Term Care Program	○Medicaid only, Medicaid and Medicare, 일반적인 요양이나 간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- home care, case management, 숙련된 간호서비스
Assisted Living Program	○특정 요양시설을 통해 장기요양, 관리, 그리고 home health care 서비스를 제공
Care-at-Home Program	○중증장애로 인해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의료 및 관련서비스를 자택에서 제공하는 제도

자료: Department of Health, New York State,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, New York City

⑤ 주요 방문면담내용

❑ 미국의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설명

○ 장기요양 서비스는 50개주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50개 주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

- 주의 재정능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뉴욕주는 50%를 부담, 시에서도 재정 부담
- 뉴욕주는 이용자격은 소득수준이 한 달에 767불 이하자임, 만약 767불이 넘게 되면 자기가 지불 하던가 사야함
- 65세이상과 저소득층이 주대상자임

❑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인원은 얼마인가?

○ 뉴욕시 800만 인구 중 290만명이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이며 이중 약12만명이 수급자임

- personal care, manage care, long term care 등이 8만 5천명이 이용중이며 이중 4만 1천명이 personal care를 받고 있으며 장애인은 약 4천8백명 정도임

❑ 수급대상자 선정 및 이용절차

○ 본인이 personal care를 받고 싶으면 담당 의사들 소견서와 함께 뉴욕시에 신청함

○ 1차 평가에서 메디케이드를 받을 능력평가을 함

○ 2차 평가에서는 이용자 가정을 사회복지사와 간호사(stay member와 또는 contractor)가 가서 재정, 수급자격, 의학적인 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함.

※ 결정권자에게 재량권이 많으나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나 stay member가 가서 state지침에 의해 평가를 함

※ 본인이 요청할 경우에 시에서 주정부로 넘어가고, 주정부에서 안 된다 하면 정부를 상대로 법원소송 가능

❑ 서비스 이용요금중 서비스 제공기관의 몇 %를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는 가?

○ 최소한 90%는 worker에게 가도록하고 서비스제공기관 10% 정도임

※ 활동보조인에게 돈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주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음

❑ 미국은 장애인이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권이 강하다고 하는데 뉴욕은 어떠한가?

○ 이용자의 서비스 종류에 대한 선택권은 없음

2. CASA (Community Alternative Systems Agency(CASA))

1 면담자 및 기관소개

❑ 면담자

면담자	방문사진
○ Randa henry-jenkins(Director of casa), henry-jenkinsr@hra.nyc.gov	

❑ 기관주소 및 전화번호

○ 주소 : 45-02 32nd place, 3rd Floor Lic, NY 11101

○ 전화번호 및 팩스 : 718-752-4455,

❑ 기관 성격

○ Medicaid가 제공하는 각 종 서비스(활동보조서비스제도 포함)를 신청자가 적절하고 원활이 받을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수행하는 기관(일종의 New York City소속의 하부기관 성격을 가지며, City와 업무협조 관계)

○ Access and Coordination Team

-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
- Medicaid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지원

▪ 서비스 제공기관을 소개(care management)

- 신청자의 자격심사와 절차에 관한 업무를 수행

▪ 서비스 적용 대상자 거주의 서비스 환경 점검

▪ Long-Term Home Health Care Program, Care-at-Home Program 대상자의 거주지는 120일 간격으로, Personal Care 대상자는 매6개월마다 점검

2 주요 방문면담내용

❏ 신청서는 어떻게 제출하나?

○ 지방자치단체나 산하단체의 담당자(Central in-take staff member or CASA coordinator)는 신청자의 필요서류 충족여부를 심사

- 담당자는 필요서류가 충족되어 2차 심사대상자 되었음을 통보,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
- 의학적 자료는 30일 이내의 의학적 정보이여야 함
- Medicaid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등급같은 state 레벨도 있다. 진단서를 작성하고 지원서를 작성해서 주 부서에 내면 그 사람이 medicare를 받을 수 있는지 자격을 부여함

○ 이용신청은 지역사회에 기관 이용자에게 이게 필요하다고 연계해주거나 병원, 양로원에서도 알려줄 수 있고, 뉴욕시청 홈페이지에 정보를 올려놓으면 보고할 수 있음.

○ 정부가 인정하는 의료전문가와 사회복지사가 1차 심의에서 전달된 관련 서류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자료요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정도를 판단하여 자격획득 여부를 결정

- 불합격 판정을 내릴 경우, 이를 신청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에게 그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를 통보해야 함
- 통상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

❏ CASA의 직원구성 어떻게 이루어지며 사정은 어떻게 진행되나?

○ 한 팀에 1명의 관리자, 4명의 case manager가 있다.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해야 하는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 꼭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는 사회복지사일 필요는 없음

○ case manager는 신청자집에 방문하여 어디에 사는지(demography), 누가 도와주는지, 의사소견서 등의 내용을 조사하여 전자 시스템에 입력함

○ case manager가 조사한 내용을 간호사에게 보내주고 간호사가 다시 방문조사함, 같은날에 갈 수 있지만 동시에 갈 수 없으며 5일 안 방문해야함

- 간호사는 의학적인 상태 확인, 필요 서비스 결정 및 서비스별소요시간 산정
- social assessment와 nurse assessment한 결과를 다른 간호사가 종합
- 최종평가결과를 의사(local medical doctor)가 최종 객관적 평가확인

▪ social assessment와 nurse assessment가 약간 차이를 의사가 타당성 평가

❑ personal assistant는 누가 모집하는 가?

○ 활동보조인을 고용하고 있는 단체(agency)가 있는데 하루에 4시간의 서비스가 필요하면 1명을 보내며 하루에 1인이 12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.

❑ 이용자의 사후관리는 누가 하나?

○ social assessment는 CASA에서도 하고 agency에서 basic case manager 있어 적절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 있는지 1년 단위로 관리함

❑ 이용자가 등급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?

○ 서비스 결정통보서 뒷면에 이의신청서 동봉되며 최종 심위위원회에서 결정

○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용자가 양식에 이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증인을 데려와서 두 개를 비교해서 판단을 적당히 했는지 판단함

❑ 활동보조인(personal care assistant)의 자격과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지?

○ agency는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. 활동보조인은 agency에서 교육을 하고, 교육은 주정부에서 내용을 제시하며 감독한다. 활동보조인의 역할은 제한되어 전문분야는 전문가가 수행함

3. 워싱턴DC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(NCIL)

1 면담자 및 기관소개

❑ 면담자

면담자	방문사진
○ kelly buckland(Executive Director) - 이메일 : kelly@ncil.org - 전화번호 : 202-207-0334(TTY) ○ lacy Pittman, Austin Walker(Policy Analyst) - 전화번호 : 202-207-0334(V)EXT 1015, 1008	

❑ 기관의 역할

○ 장애인자립생활센터, 주장애인자립센터 협의회, 기타 장애인인권기관 대표함

○ 권익보호, 연간회의 개최, 국가인권상 수여, 독립생활훈련

○ 정부서비스 안내 등

- 메디케어, 메디케이드 사회보장장애보험, 생계비 보조금, 외상성 뇌손상 면제서비스, 식료품 무료교환권, 주거, 교통, 자활기술훈련, 취업준비, 레이레이션 프로그램

❑ 기관규모 : 직원 10명, 총자산 $523,457

○ 2010년 수입 $1,349,731

- 기증 24%, 연간회의 22%, 회비 22%, 프로그램 30%, 기타 2%

○ 2010년 지출 $1,397,729

- 장애인권익보호 45%, 훈련과 지원29%, 연간 회의 16%, 행정 10%

2 주요 방문면담내용

❑ NCIL의 조직과 역할은?

○ 일반 IL센터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멤버십 조직이고, 일반 센터는 개인소유

이면서 비영리적이다. 일반 IL 센터는 이사회와 같은 조직이 있는데 대부분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, NCIL은 일반센터의 의견을 의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.

○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역대표위원회, 실행위원회, 다양성 위원회, 재정위원회 등 22개 이사회로 구성

❑ Personal Service와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의 차이점은?

○ medicaid의 HCBS는 범위가 넓다. 그 중에 보장구, 일일프로그램, 주간 프로그램, 케어 등도 포함되는 등 넓은 개념인것에 비해서 Personal Service는 장애인들이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임.

❑ IL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?

○ 이사회의 51%이상이 장애인, 직원의 50%이상이 중증장애인이어야 함

○ 비영리조직이고 재가장애인이 이용가능함.

○ 재정규모는 5만 달러 ~ 5천만달러로 센터마다 차이가 남.

○ 4가지의 핵심서비스(정보제공 및 의뢰, 동료상담, 자립생활 기술훈련, 옹호활동)를 제공해야함.

○ 서설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함.

❑ IL에서 Personal Service 제공여부?

○ 센터마다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보 의뢰하는 것만 하는 곳도 있고 서비스를 직접 주는 곳도 있고 센터가 고용주가 되어 활동보조인을 고용하여 서비스를 주는 곳도 있음.

4. 뉴욕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(CIDNY)

1 면담자 및 기관소개

❑ 면담자

면담자	방문사진
○ Sandy Regenbogen-Weiss(Director of consumer services) - 이메일 : sregenbogen@cidny.org - 홈페이지 :www.cidny.org ○ Margi Trapani(communications & Education Director) - 이메일 : mtrapani@cidny.org	

❑ 기관의 주요사업

○ 장애인 권익옹호 사업

○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사업

○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

○ 정부서비스 안내 등

- 메디케어, 메디케이드 사회보장장애보험, 생계비 보조금, 외상성 뇌손상 면제서비스, 식료품 무료교환권, 주거, 교통, 자활기술훈련, 취업준비, 레이레이션 프로그램

❑ 기관규모 : 직원 20명

○ 자활센터 운동의 일환으로 1979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

○ 일반인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기반의 전국네트워크로서 모든 장애를 포괄하는 통합 장애인조직이며 장애인들의 자활 기회 증진을 목표로 함.

2 주요 방문면담내용

❑ CIN-DY의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는가?

○ CIN-DY는 정부지원과 민간후원으로 이루어짐.

- 장애인들에게 입학, 통학 등의 지원하고 정부로부터 수입이 있고 개인후원금 있음.

❑ 장애인들에게 서비스 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?

○ 장애인관련 단체와 다양한 정보확보하여 개인들에게 알맞은 사업을 연계

정보는 전산화되어 있지 않지만 오프라인으로 확보되어 있음.

○ 장애별로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모든 장애인이 이용하여 각 단체들의 사람들도 알고 있고 지속적인 접촉을 해서 이용자에게 재정지원이나 사정도 말해주고 커뮤니케이션을 함.

○ 최근에는 젊은 장애인들과 교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며 특히 교육, 직업,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, 어떤 권리가 있고, 어떤 자원이 있는지 알려주려고 하며 부모님께 알려줌.

○ 정보획득은 웹사이트, 장애인단체을 통하여 하는 데 어떤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하기도 하지만 1년 동안 계속 컨텍해서 정보를 얻으려 하기도함

○ 정보가 바뀌면 이곳에 전문가도 있기는 하지만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규정과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들을 수 있다.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이런 일이 바뀔 것이라고 한다면 이용자나 상담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줌.

❑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?

○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은 장애인협회나 기관에서 시와 계약을 맺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원하고 있으며 il센터는 장애인 권리옹호 등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음.

❑ 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

○ 1960년대 시작. 뉴욕시에서 제일 큰 기관

○ 메디케어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 등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고, 신청하는데 도움을 주며 독립생활을 하는 기술을 알려줌.

○ 이용자들 중에 사회운동가가 있으며 이들은 뉴욕시에 있는 의회 미팅에도 나가고,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

려주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함.

○ 이용자의 85%가 장애인이며 매니저도 장애인이이며 비장애인에게 장애인과의 상호작용과 장애인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는 역할을 함.

○ 자립생활센터가 미국에 400군데 정도 있음.

5. 할렘 장애인자립생활센터(HILC)

1 면담자 및 기관소개

❑ 면담자

면담자	방문사진
○ Christina Curry(Executive Director) - cexec@hilc.org.or, cdcurry@vzw.blackberry.net	

❑ 기관의 주요사업

○ 동료상담, 주택지원, 정보제공과 지역사회서비스 연계

○ 소득상담, 장애인옹보,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화연계, 부모상담 등

❑ 기관소개

○ 91년 할렘병원의 재활센터에서 분리 되서 나왔는 데 이유는 인종, 문화와 관계없이 고객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.

○ 할렘은 정부에서 지정한 공식적인 조직이며 직원은 14명 정도있음.

2 주요 방문면담내용

❑ 이용자중에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이용자가 있는 가?

○ 이용자가 많이 있지만 정확한 인원은 알수 없음.

○ 이용자는 약2,000명 정도이며 4,000명 정도을 타켓으로 하고 있음.

❑ 할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사무실 소개

○ 사무실이 모든 장애인이 다른사람의 도움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함

○ 주요역활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.

○ 센터 이용자는 북맨해튼 지역장애인이며 주로 할렘지역을 담당하고 약 2천명 된다. 북맨해튼 까지는 4천명 정도 된다. 개념상 할렘에 있는 장애인들은 consumer가 되고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outreach가 됨.

❑ 활동보조서비스를 할렘센터 제공하고 있는가?

○ 할렘센터에서는 personal assistant라고 아닌 accommodation을 제공하고 있음(personal assistant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됨).

○ personal assistant는 메디케이드 대상자에게 Home based care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음.

❑ 아주 중증장애인이 서비스를 원하면 어떤 서비스를 주는가?

○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요양원에서 하고 있음.

○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메이케이드, 직업정보연계를 할 수 있음.